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료기관 인증 관련 이의신청 규정 정비〉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16231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개정안의 내용	2
2. 검토의견	3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7

I. 개요

1. 제안경위

- (1) 제 출 자 : 정부
- (2) 제 출 일 : 2026. 1. 22.
- (3) 회 부 일 : 2026. 1. 2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의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의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이의신청제도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의 평가 결과 또는 인증등급의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5).

현행	개정안
제58조의5(이의신청) ① <u>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u>	제58조의5(이의신청) ① <u>제58조의4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이의가 있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③ <u>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u>

현행	개정안
<신설>	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시행일: 공포한 날	

2. 검토의견

- 현행법 제58조의5제1항 및 제3항은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이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방법 및 처리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인증원의 장으로 하여금 그 이의신청 내용을 조사한 후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¹⁾

1) 「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4(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 통보) ①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의4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 및 인증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별지 제23호의9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인증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이의신청 내용을 조사한 후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동 개정안은 법제처의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이의신청 관련 하위 법령 정비방안’에 따른 것인데, 법제처는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신청기간 또는 처리기간을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규정과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반한다는 입장임.

- 「행정기본법」 제36조²⁾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으면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음.
- 이는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과 차이가 있는데,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제5조³⁾는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행정기본법」이 정한 기준이나 절차와 다른 내용을 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⁴⁾

□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면서, 법률과 시행규칙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이의신청의

2)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3)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이의신청 관련 하위법령 정비방안’, 2025.8.

상대방을 법률에 맞도록 수정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기간을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의신청과 관련한 절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의료기관 인증은 4개 영역, 13개 장, 92개 기준에 따라 512개의 조사항목을 평가하며, 2일에서 4일간의 현장조사 및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이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사실조사와 전문적 검토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행정처분의 이의신청보다 결과 통보 기한을 길게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행정기본법」 제5조의 ‘다른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하위법령 자체는 다른 법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다른 법률의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인 경우 다른 법률의 특별규정 체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따라서, 「의료법」에서 위임규정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부령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달리 정하는 방식도 허용될 수 있을 것이므로, 어떠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법제처도 ‘이의신청 관련 하위법령 정비방안’에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처리기간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행정기본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법체계 정합성 유지를 위하여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례 유지가 필요한 경우는 법률로 상향하도록 하면서도, 하위법령에 특례를 둘 수 있는 위임규정을 신설하는 유형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의신청 관련 하위법령 정비방안 개별법 정비 기준]

구분	내용
유형 1	• 「행정기본법」과 달리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규정과 크게 차이가 없거나* 동일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의신청 처리기간이 15일인 경우 **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위법령 관련 규정 삭제 또는 정비
유형 2	• 「행정기본법」과 달리 규정되었으나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가 필요한 경우 → 특례사항을 별도로 법률에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에 특례를 둘 수 있는 위임규정을 신설

◆ 정비안 예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현 행	정 비 안
제5조(평가인정의 취소 등)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되는 등 성질상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3(평가인정의 취소 및 시정명령 등) ⑥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하위법령에 이의신청에 대한 신청기간 및 처리기간을 둘 수 있는 위임근거 신설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 (수용)

- ☐ 「행정기본법」 상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동법은 행정의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일반법으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법을 따르도록 정함.
- ☐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경우, 그와 다른 내용(30일 이내 통보)을 시행 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법체계의 정합성이 맞지 아니하므로 상향 입법을 통해 행정기본법과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대한치과의사협회 (찬성)

- ☐ 개정안은 새로운 규제나 권리 제한을 신설하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기존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되어 있던 사항을 법률 조항으로 명확히 정비한 것이므로 찬성함.

3)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수정 찬성)

- ☐ 개정안의 내용에 찬성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재심의를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수정안을 제시함.

4)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찬성)

- ☐ 개정안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이의신청제도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므로 찬성함.

문 의 처
02)6788-5494

참고1

의료기관 인증 현황

(’25.12월말 기준, 단위 : 개소)

년도	종별	신청	조사 시행	등급			
				계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
2021	계	511	424	474	382	1	91
	상급종합병원	4	3	3	3	-	-
	종합병원	29	29	36	36	-	-
	병원*	39	49	62	61	1	-
	치과병원	1	1	1	1	-	-
	한방병원	5	9	9	9	-	-
	요양병원	417	321	345	255	-	90
	정신병원	16	12	18	17	-	1
2022	계	644	543	492	410	10	72
	상급종합병원	32	23	12	12	-	-
	종합병원	54	44	19	19	-	-
	병원*	34	39	37	37	-	-
	치과병원	8	8	6	6	-	-
	한방병원	6	7	7	7	-	-
	요양병원	500	414	400	318	10	72
	정신병원	10	8	11	11	-	-
2023	계	448	600	576	528	6	42
	상급종합병원	9	18	29	29	-	-
	종합병원	54	63	82	82	-	-
	병원*	22	24	23	23	-	-
	치과병원	-	-	2	2	-	-
	한방병원	1	3	3	3	-	-
	요양병원	351	481	430	383	6	41
	정신병원	11	11	7	6	-	1
2024	계	474	488	542	521	1	20
	상급종합병원	3	3	3	3	-	-
	종합병원	84	89	84	84	-	-
	병원*	76	57	49	49	-	-
	치과병원	2	2	2	2	-	-
	한방병원	8	1	1	1	-	-
	요양병원	292	326	392	371	1	20
	정신병원	9	10	11	11	-	-
2025	계	394	394	411	161	6	15
	상급종합병원	3	3	3	3	-	-
	종합병원	29	29	28	28	-	-
	병원*	34	34	36	35	1	-
	치과병원	2	2	2	-	-	-
	한방병원	1	1	7	7	-	-
	요양병원	263	263	284	264	-	-
	정신병원	12	12	11	11	5	15

* 병원: 재 활의료기관 인증조사 시행으로 2019년부터 재 활의료기관 포함

※ 조사시행 후 인증 등급 결정(공표) 전 의료기관 미포함(조사시행 개소수와 인증등급 개소수가 불일치함)

참고2

의료기관 인증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 건수

(’25.12월말 기준, 단위 : 개소)

년도	종별	신청	처리결과			
			계	기각	부분인용	인용
2021	계	9	9	5	2	2
	상급종합병원	-	-	-	-	-
	종합병원	-	-	-	-	-
	병원*	-	-	-	-	-
	치과병원	-	-	-	-	-
	한방병원	-	-	-	-	-
	요양병원	6	6	4	2	-
	정신병원	3	3	1	-	2
2022	계	7	7	5	-	2
	상급종합병원	-	-	-	-	-
	종합병원	-	-	-	-	-
	병원*	-	-	-	-	-
	치과병원	-	-	-	-	-
	한방병원	-	-	-	-	-
	요양병원	7	7	5	-	2
	정신병원	-	-	-	-	-
2023	계	14	14	8	1	5
	상급종합병원	4	4	1	1	2
	종합병원	4	4	4	-	-
	병원*	1	1	-	-	1
	치과병원	-	-	-	-	-
	한방병원	-	-	-	-	-
	요양병원	5	5	3	-	2
	정신병원	-	-	-	-	-
2024	계	-	-	-	-	-
	상급종합병원	-	-	-	-	-
	종합병원	-	-	-	-	-
	병원*	-	-	-	-	-
	치과병원	-	-	-	-	-
	한방병원	-	-	-	-	-
	요양병원	-	-	-	-	-
	정신병원	-	-	-	-	-
2025	계	5	5	4	-	1
	상급종합병원	-	-	-	-	-
	종합병원	-	-	-	-	-
	병원*	1	1	1	-	-
	치과병원	-	-	-	-	-
	한방병원	-	-	-	-	-
	요양병원	4	4	3	-	1
	정신병원	-	-	-	-	-

* 병원: 재활의료기관 인증조사 시행으로 2019년부터 재활의료기관 포함